

투자위험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미래에셋자산운용(주)는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미래에셋로저스농산물지수특별자산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셋로저스농산물지수특별자산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미래에셋로저스농산물지수특별자산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미래에셋자산운용(주)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investments.mirae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2016년 03월 18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6년 03월 24일

6. 모집(매출)증권의 종류 및 수 수익증권 10조좌
[모집(매출)총액]

7. 모집(매출)기간(판매기간)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됩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kofia.or.kr

서면문서: 금융투자협회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참고

9.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 관련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로저스농산물지수특별자산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 [62096]

| 투자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 | | | | |
|-------------------------|----------|----------|----------|----------------|
| 1 | 2 | 3 | 4 | 5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이 요약정보는 '미래에셋로저스농산물지수특별자산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 | | |
|--------------|---|--------------|---|
| 투자자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집합투자기구 특징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대상자산 : 이 투자신탁은 농업관련일반상품(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합니다. 2.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Agriculture Index□ Excess Return 지수수익률을 추적하기 위해 해외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며,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추적오차율 최소화를 추구합니다. | | |
| 분류 | 투자신탁, 특별자산파생,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 | |
| 집합투자업자 | 미래에셋자산운용(주)(전화) ☎ 1577-1640 | | |
| 모집(판매) 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 에 한하여 모집, 판매됩니다. | 모집(매출) 총액 | 10조좌(단, 모집예정 금액 한도 내에서 존속기간 동안 계속 모집 가능) |
| 효력발생일 | 2016년 03월 24일 | 존속 기간 |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
|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종류(Class) | 가입자격 | 수수료율 | | |
|-----------|---------|----------|----------|------------------|
| | | 선취 판매수수료 | 후취 판매수수료 | 판매수수료 |
| 종류A | 제한 없음 | - |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 보수(연, %) | | | | |
| 종류(Class) | 판매회사 보수 | 운용 등 | 기타비용 | 총보수비용 |
| 종류A | 1.100 | 0.59 | 0.17 | 1.86 |

| | |
|---------------|--|
| ※ 주석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에 기재된 종류(클래스)는 대표적인 종류를 명시한 것으로서 그 외의 종류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보수의 지급 시기 :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후금 * 수익자는 증권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보수·비용 이외에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매입 방법 | 1.17시이전 : 자금을 납입하는 영업일(D)로 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2.17시 경과후 : 자금을 납입하는 영업일(D)로 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환매 방법 | 1.17시이전 : 환매청구일(D)로 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2.17시 경과후 : 환매청구일(D)로 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5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
| 기준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정방법 : 기준가격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기준가격은 공고·계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공고·계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1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1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공시장소 :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 | |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 목적

이 투자신탁은 농업관련일반상품(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 기본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Agriculture Index® Excess Return 지수수익률을 추적하기 위해 해외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며,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추적오차율 최소화를 추구합니다.

※ 비교지수 :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Agriculture Index® Excess Return

<Rogers 지수: Beeland Interests, Inc.가 작성하여 발표>

- 지수 개요: 실물자산중에서 농업관련실물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선물” 등으로 이루어진 상품지수.(Commodity Index)

- 구성종목 : 22종목(2013년 1월 28일 현재)
- 기준일 및 기준지수 : 2004년 11월 30일 1000pt
- 타 인덱스와는 달리 Commodity의 생산량은 고려하지 않음.
- 지수정보확인처 : Bloomberg (RICIAGER:IND)

주) 실물자산이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 등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등을 의미합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3.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4. 운용전문인력

| 성명 | 출생년도 | 직위 | 운용현황(16.02.29기준) |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
|-----|------|----|------------------|----------|--|------------------|------|
| | | | 운용중인집합투자기구수 | 운용자산규모 | | | |
| 권정훈 | 1975 | 팀장 | 23개 | 3,144억 원 | (03년~04년) 미래에셋자산운용 리서치 투자전략 (04년~06년) 미래에셋자산운용 금융공학 팀 (06년~12년)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Multi Strategy본부 (12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금융공학 본부 | -개 | -억 원 |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실적 추이

| 연도 (기간) | 최근 1년차 '14.11.01~'15.10.31 | 최근 2년차 '13.11.01~'14.10.31 | 최근 3년차 '12.11.01~'13.10.31 | 최근 4년차 '11.11.01~'12.10.31 | 최근 5년차 '10.11.01~'11.10.31 |
|------------|-------------------------------|-------------------------------|-------------------------------|-------------------------------|-------------------------------|
| 종류A | -15.45 | -4.29 | -10.91 | 1.83 | 6.13 |
| 투자신탁 | -13.97 | -2.65 | -9.34 | 3.65 | 8.05 |
| 비교지수 | -12.54 | -7.59 | -12.92 | -0.49 | -0.72 |

상기사항은 대표종류 수익률만 기재하였으며, 나머지 종류에 대한 수익률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 주요투자위험 | 투자위험 주요 내용 |
|--------------|---|
| 원본손실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
| 주요 운용위험 | 상품(Commodity)의 가치는 해당 종목의 수요/공급 및 글로벌 경제성장률, 천재지변, 지리적/정치적 위험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을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그 위험을 회피할 수는 없으며, 주식이나 채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이 훨씬 큰 특징이 있습니다. 추적대상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 실현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라고 할지라도 아래의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추적대상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과 추적대상 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자는 당해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 제약요소 : 지수 구성종목 변경에 따른 매매시 시장 충격, 상/하한가, 거래정지 등으로 인한 미체결, 인덱스운용시 활용하는 모델의 지수추적 과정, 환율변동(해외투자), 운용/판매 등 각종 보수, 위탁매매수수료, 지적재산권 수수료와 같은 여러 가지 운용관련 비용발생, 너무 작은 운용규모, 대량 또는 빈번한 설정/해지 등 이 집합투자기구는 시장(혹은 비교지수) 수익률 달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시장(혹은 비교지수) 수익률 하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즉, 시장수익률 하락시 수익률하락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포트폴리오 조정 등 별도의 노력을 수행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환율변동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환위험 노출과 관련하여서는 당투자신탁 위험관리의 환위험 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파생상품 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에 일부 투자할 수 있으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위험에 관한 지표(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만기 손익 구조, 시나리오법에 의한 손익변동, 최대손실금액 등)는 “미래에셋자산운용㈜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외 주요 투자위험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자위험 등급 분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농업관련 일반 상품선물 등에 투자하므로 위험등급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위험 수준을 감내할 만한 위험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이 본인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위험등급분류는 집합투자업자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나.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법령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② 환위험관리

| 구분 | 세부 내용 |
|----------------------------|--|
| 환헤지 여부 | 이 투자신탁은 상품(Commodity)를 기초로 하는 해외선물에 주로 투자합니다. 해외 상품선물 거래시 위탁증거금율은 5~15% 수준이며, 이 투자신탁의 환헤지 전략은 외화로 평가되는 부분인 위탁증거금을 주요대상으로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환헤지 전략은 결과적으로 투자신탁재산 중 외화자산의 90%이상을 환헤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
| 환헤지 방법 | 환헤지 전략 실행 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인 통화선물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목표 헤지비율 | 외화자산의 90%이상을 환헤지하는 효과를 목표로 합니다. 다만, 보유 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및 헤지 비용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환헤지의 비용 및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 국가간 금리차이로 인한 손익을 제외하고도, 환헤지를 위해 중개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주된 환헤지 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데, 선물환 거래는 중개인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과의 손익교환방법에 따라 총 손익을 정산하게 되므로, 환헤지에 따른 별도의 비용산출을 추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해서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정보

(1) 과세

※ 수익자는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손익을 제외한 과세소득(이자, 배당 등)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15.4%, 내국법인 15.4% 원천징수)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경우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과세 및 세제혜택 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전환 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http://investments.mirae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investments.miraeasset.com>)
-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investments.miraeasset.com>)

[알림]

” Jim Rogers” , “James Beeland Rogers, Jr.” , “Rogers ”,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A griculture Index Excess Return” 는 Beeland Interests, Inc.의 트레이드 마크이자 서비스마크이며,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와 “RICI” 는 “Beeland Interests, Inc.의 등록된 트레이드 마크 및/또는 서비스 마크로서 James Beeland Rogers, Jr.가 소유, 관리하고 있으며 라이센스의 대상이 됩니다. Jim Rogers/James Beeland Rogers, Jr. 와 이와 유사한 이름들은 James Beeland Rogers, Jr. 의 트레이드 마크이자 서비스 마크입니다. 미래에셋 로저스 농산물지수 특별자산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은 Beeland Interests, Inc. (“Beeland Interest s”) 또는 Jim Rogers로부터도 후원을 받거나 보증, 판매 또는 판촉되지 않습니다. 또한 Beeland Interests나 Jim Rogers는 이 투자설명서의 정확성이나 완전성과 관련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을 대표하거나 보장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뿐 아니라, 실물자산(Commodity)이나 관련 유가증권에의 투자 또는 특히 미래에셋 로저스 농산물지수 특별자산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 또는 선물에의 투자를 권유하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BEELAND INTERESTS와 계열사 및 관계자들은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RICI□ ”), 이 지수의 sub-index 및 그 안에 포함된 자료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당자는 자료의 오류, 누락, 중단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미래에셋 로저스 농산물지수 특별자산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 또는 RICI□, 이 지수의 sub-index와 관련 자료를 사용하는 자가 얻게 될 결과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BEELAND INTERESTS와 그 계열사 및 관계자들은 명시적인 또는 묵시적인 그 어떤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상품성이나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또는 RICI□, 이 지수의 sub-index의 사용에 관한 모든 보증을 모두 부인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사항들과 관련하여 BEELAND INTERESTS와 그 계열사 및 관계자들은 투자에 따른 어떠한 손실이나 간접적, 법적, 특정한 혹은 필연적인 손실에 대하여 그 가능성에 언급되어 있다 할지라도 제한없이, 어떠한 상황에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어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 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 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동 집합투자 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 로서 원금 손실이 가능하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 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7.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이 집합투자기구는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10.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제 수령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11.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

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 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12. 이 집합투자기구는 증권집합투자기구중 법 제93조에 따른 파생상품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투자협회에서 정한 별도의 자격요건(“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3조 1항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 1종의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이 있는 자만이 투자권유를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0 이 투자신탁은 모든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이 아닙니다. 만일, 이 투자설명서를 끝까지 읽은 후에도 상품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상품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투자위험” 을 포함한 이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판매) 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책임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제 6 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 | | | | |
|-------------|---------------------------------------|-------|-------|-------|-------|
| 명 칭 | 미래에셋로저스농산물지수특별자산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62096) | | | | |
| (종류) 클래스 | 종류A | 종류B | 종류I | 종류C-W | 종류S |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62097 | 62098 | 77401 | 97854 | AR007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특별자산파생
- 다. 개방형 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 라. 추가형 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 마. 특수형태 : 종류형

* 종류형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보수가 다른 여러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을 의미합니다.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판매) 예정금액 : 10조좌

- 주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집예정금액 한도내에서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 주2)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 |
|-----------|---|
| 모집(판매) 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됩니다. |
| 모집(판매) 장소 |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investments.miraeasset.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모집방법 및 절차 | 판매회사의 영업일에 판매회사가 정한 기준으로 매입, 판매가 가능합니다. |

*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판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 | | | | |
|-------------|--|-------|-------|-------|-------|
| 명 청 | 미래에셋로저스농산물지수특별자산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 (62096) | | | | |
| (종류) 클래스 | 종류A | 종류B | 종류I | 종류C-W | 종류S |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62097 | 62098 | 77401 | 97854 | AR007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일 자 | 내 용 |
|------------|--|
| 2006.11.16 | 최초 설정 |
| 2008.01.09 | 종류 I 가입자격 변경 |
| 2009.05.0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펀드명칭 변경 [미래에셋맵스 로저스 농산물지수 종류형 파생상품투자신탁 → 미래에셋맵스 로저스 농산물지수 특별자산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 |
| 2010.03.16 |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매입기준가격 적용방식 변경 |
| 2010.05.03 | 판매보수 인하 [종류 A 수익증권] 투자신탁 최초 설정일~2010년 5월 2일 : 1.26% 2010년 5월 3일 ~ 2011년 5월 2일 : 1.22% 2011년 5월 3일 ~ 2012년 5월 2일 : 1.18% 2012년 5월 3일 ~ 2013년 5월 2일 : 1.14% 2013년 5월 3일 이후 : 1.10% |
| 2010.11.24 | 종류 C-W 수익증권 신설 종류 C-I 수익증권 가입자격 수정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소규모펀드 해지 등에 관한 사항) |
| 2011.01.28 | 종류 C-I 수익증권 가입자격 보완 |
| 2012.03.26 | 집합투자업자 합병(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주)→미래에셋자산운용(주)) 투자신탁 명칭변경(舊 미래에셋맵스 로저스 농산물지수 특별자산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 |
| 2014.03.26 | 종류 S 추가 |
| 2015.07.15 | 종류 I 가입자격 일부 변경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가. 회사의 개요

| | |
|-------------|--|
| 회 사 명 | 미래에셋자산운용(주) |
| 주 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 센터원빌딩 이스트타워 (우. 100-210) ☎ 1577-1640 |

나. 운용(지시) 업무등의 위탁여부

해당사항 없음.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 성명 | 출생년도 | 직위 | 운용현황(16.02.29기준) |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
|-----|------|----|---------------------|------------|--|------------------|---|
| | |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 운용자산 규모 | | | |
| 권정훈 | 1975 | 팀장 | 23개 | 3,144억 원 | (03년~04년) 미래에셋자산운용 리서치 투자전략 (04년~06년) 미래에셋자산운용 금융공학팀 (06년~12년)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Multi Strategy본부 (12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금융공학본부 | - | - |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 기 간 | (책임) 운용전문인력 |
|-------------------------|-------------|
| 2006.08.16 ~ 2007.08.30 | 이준용 |
| 2007.08.31 ~ 현재 | 권정훈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투자신탁, 특별자산파생,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가입자격 | 최초설정일 | 지급비율(연 %) | | | | | |
|-----|-------|------------|-------------|-------------|-------------------|------|-------|------|
| | | | 수수료 | | 보수 | | | |
| | | | 선취판매 수수료 | 후취판매 수수료 | 판매 수수료 | 운용보수 | 판매보수 | 신탁보수 |
| 종류A | 제한 없음 | 2006.11.16 | - | - | 90일미만: 이익금의 70 | 0.54 | 1.100 | 0.03 |

| | | | | | % | | | | |
|-------|--------------------------------------|------------|---------------|--------------------------|-------------------|------|-------|------|------|
| 종류B | 제한 없음 | 2006.11.16 | 납입금액의 0.800이내 | - | - | 0.54 | 0.760 | 0.03 | 0.02 |
| 종류I | 기관투자자 등 | 2008.01.11 | - |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0.54 | 0.030 | 0.03 | 0.02 |
| 종류C-W | 랩어카운트 투자자 | - . . | - | - |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 0.54 | - | 0.03 | 0.02 |
| 종류S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 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가입자 전용 | 2014.04.23 | - |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0.54 | 0.300 | 0.03 | 0.02 |

* 가입자격의 자세한 사항은 제2부의 “11. 매입, 판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종류별 가입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내에서 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별로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농업관련일반상품(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 | 투자대상 | 투자비율 | 투자대상 세부설명 |
|---|---------|-------|--|
| 1 | 채권 | 90%이하 |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
| 2 | 자산유동화증권 | 40%이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 |

| | 투자대상 | 투자비율 | 투자대상 세부설명 |
|----|-------------|---|--|
| | | | 증권 |
| 3 | 기업어음증권 및 어음 | 40%이하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 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등”이라 한다) |
| 4 | 집합투자증권등 | 5%이하 (단,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가능) |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 (다만,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95 이상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등에 투자하는 경우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95 이상을 법 제42조에 따라 위탁하는 방법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 5 | 장내파생상품 | - |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농업관련일반상품·채권·통화나 농업관련일반상품·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다만, 통화관련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의 거래에 한한다) *농업관련일반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
| 6 | 장외파생상품 | - |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통화나 통화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다만, 위험회피목적의 거래에 한한다.) |
| 7 | 금리스왑거래 | 100%이하 |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 |
| 8 | 환매조건부매도 | 투자신탁 보유증권 총액의 50%이하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
| 9 | 증권의 대여 | 투자신탁 보유증권 총액의 50%이하 |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 |
| 10 | 증권의 차입 | 20%이하 | ①~④에 의한 증권의 차입 |
| 11 | 신탁업자와의 거래 | -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 | 투자대상 | 투자비율 | 투자대상 세부설명 |
|----|---------------------------------------|------|--------------------------------------|
| 12 | 단기대출주1), 금융기관에의 예치주2)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

주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주3)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4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또한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5~10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구분 | 내용 | 적용제외 |
|---|------------|--|---------------|
| 1 |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 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 |
| 2 | 동일종목 투자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
| 3 | 동일종목투자(예외)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 - |

| 구분 | 내용 | 적용 제외 |
|----------------|--|---------------|
| | <p>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위의 “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증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 |
| 4 동일법인발행주식 |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 |
| 5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
| 6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
| 7 파생상품투자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
| 8 파생상품 투자 |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 |
| 9 계열회사 발행증권 |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 |
| 10 후순위채권 |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 |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동일종목투자”, “동일법인 발행주식”, “파생상품 매매”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이 투자신탁은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Agriculture Index® Excess Return 지수수익률을 추적하기 위해 해외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며,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추적오차율 최소화를 추구합니다.

[추적오차(Tracking Error) 관리방안]

추적오차율 = 표준편차(과거1년간 펀드의 일간 수익률 - 과거1년간 벤치마크의 일간 수익률)

이 투자신탁은 상기 방식으로 계산된 추적오차율이 10%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하며, 추적오차율 허용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추적오차율이 10%이하가 되도록 리밸런싱합니다. 다만, 상기 관리방안이 추적오차 최소화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 추적오차율 계산 시 일간 수익률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추적오차율을 연환산하여 산출함.

※ 비교지수: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Agriculture Index® Excess Return (2013년 01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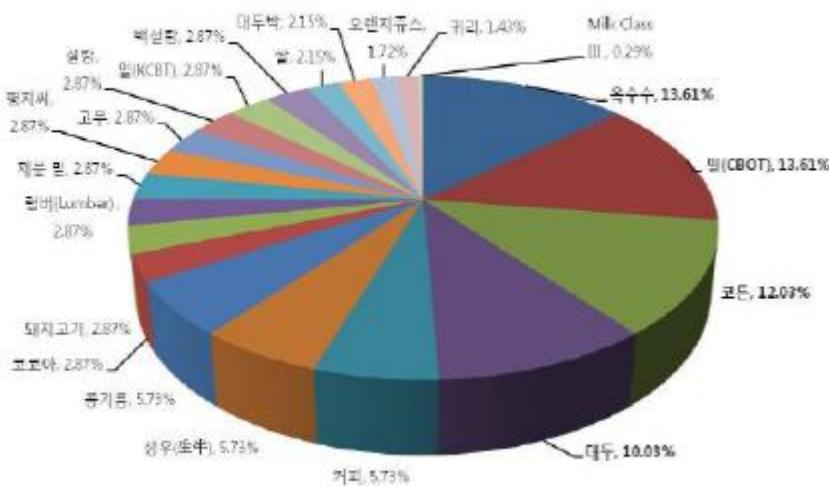
- 실물자산중에서 농업관련실물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선물” 등으로 이루어진 상품지수.(Commodity Index)
- 지수산정기관 : JIM ROGERS
- 구성종목 : 22종목
- 기준일 및 기준지수 : 2004년 11월 30일, 1,000pt
- 타 인덱스와는 달리, Commodity의 생산량은 고려하지 않음.
- 지수정보 확인처 : Bloomberg (RICIAGER:IND)

주) 실물자산이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 등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등을 의미합니다.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Agriculture 지수 구성

| 종목명 | 비중(%) |
|----------------|---------|
| 옥수수 | 13.61% |
| 밀(CBOT) | 13.61% |
| 코돈 | 12.03% |
| 대두 | 10.03% |
| 커피 | 5.73% |
| 생우(生牛) | 5.73% |
| 콩기름 | 5.73% |
| 코코아 | 2.87% |
| 돼지고기 | 2.87% |
| 膻버(Lumber) | 2.87% |
| 제분 밀 | 2.87% |
| 평지씨 | 2.87% |
| 고무 | 2.87% |
| 설탕 | 2.87% |
| 밀(KCBT) | 2.87% |
| 백설당 | 2.87% |
| 쌀 | 2.15% |
| 대두粕 | 2.15% |
| 오렌지쥬스 | 1.72% |
| 귀리 | 1.43% |
| Milk Class III | 0.29% |
| 합계 | 100.00% |



※ 비교지수의 종목수, 비율 등은 시장상황 및 지수산출기관의 지수산정방식의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교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선물(Futures)를 통한 투자시 유의사항]

※ 롤링효과(Rolling Effect)

선물시장에서 원월물의 가격이 최근월물의 가격보다 높은 콘탱고(Contango)상황이 지속될 경우 롤링효과(Rolling Effect)는 지속적으로 (-)의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고 시장국면이 지속적으로 변하는 상황에서는 손실폭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현물가격은 상승하였으나, 파생상품 투자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현물가격은 하락하였으나 파생상품 투자에 대해 이익이 발생하는 상반된 손익구조가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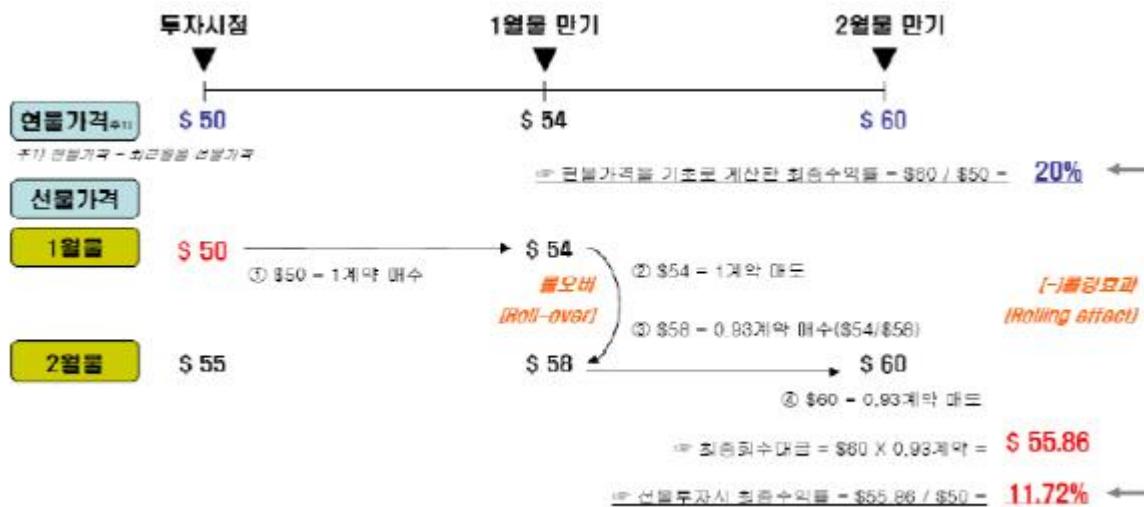
이러한 롤링효과(Rolling Effect)는 사전적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선물시장 월물별 가격곡선의 변동성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이상의 롤링효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다음의 예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콘탱고(Contango): 현물가격 < 선물가격]

콘탱고는 원월물의 선물가격이 근월물(또는 현물가격)보다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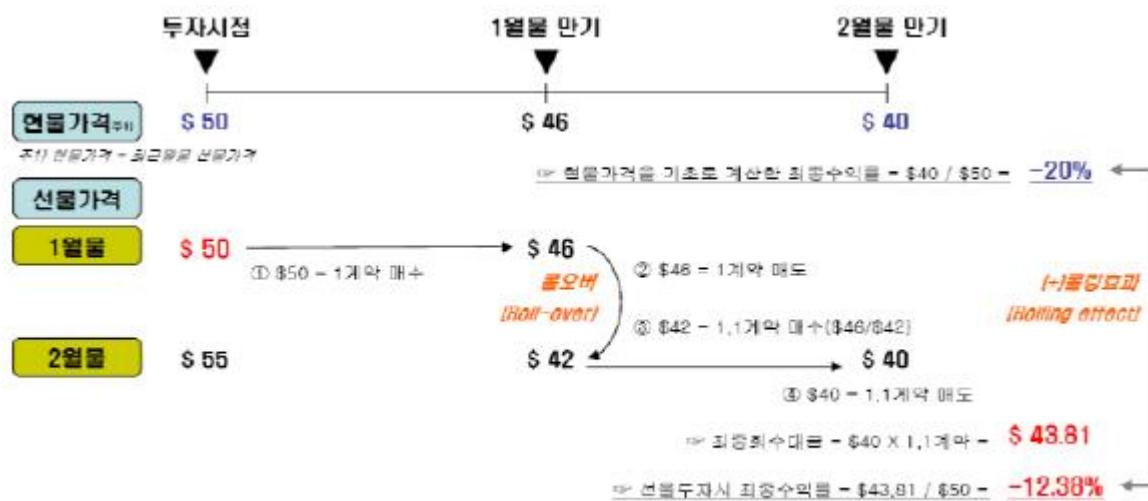
콘탱고 상황일 때에는 아래 그림처럼 롤오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투자수익률에 음(-)의 영향을 미침으로써 현물가격을 기초로 계산한 수익률과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롤링효과)



[백워데이션(Backwardation): 현물가격 > 선물가격]

백워데이션은 원월물 선물가격이 근월물(또는 현물가격)보다 낮은 상태를 말합니다.

백워데이션 상황일 때에는 아래 그림처럼 롤오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수익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투자수익률에 양(+)의 영향을 미침으로써 현물가격을 기초로 계산한 수익률과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롤링효과)



※ 비교지수 :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Agriculture Index® Excess Return

<Rogers 지수: Beeland Interests, Inc.가 작성하여 발표>

- 지수 개요: 실물자산중에서 농업관련실물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선물” 등으로 이루어진 상품지수.(Commodity Index)
- 구성종목 : 22종목(2013년 1월 28일 현재)
- 기준일 및 기준지수 : 2004년 11월 30일 1000pt
- 타 인덱스와는 달리 Commodity의 생산량은 고려하지 않음.
- 지수정보확인처 : Bloomberg (RICIAGER:IND)

주) 실물자산이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 등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상기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법제89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법령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② 환위험관리

| 구분 | 세부 내용 |
|--------|--|
| 환헤지 여부 | 이 투자신탁은 상품(Commodity)를 기초로 하는 해외선물에 주로 투자합니다. 해외 상품선물 거래시 위탁증거금율은 5~15% 수준이며, 이 투자신탁의 환헤지 전략은 외화로 평가되는 부분인 위탁증거금을 주요대상으로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환헤지 전략은 결과적으로 투자신탁재산 중 외화자산의 90% 이상을 환헤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

| | |
|----------------------------|---|
| 환헤지 방법 | 환헤지 전략 실행 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인 통화선물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목표 헤지비율 | 외화자산의 90%이상을 환헤지하는 효과를 목표로 합니다. 다만, 보유 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및 헤지 비용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환헤지 장점 |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환율하락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낮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상쇄시켜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문제를 극복하게 해 줍니다. 나아가, 국내보다 금리가 낮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
| 환헤지 단점 | 환헤지 효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장점이 있는 반면 아래와 같이 이에 상응하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즉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환율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높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을 상쇄시켜 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또한, 국내보다 금리가 높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
| 환헤지의 비용 및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 국가간 금리차이로 인한 손익을 제외하고도, 환헤지를 위해 중개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주된 환헤지 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데, 선물환 거래는 중개인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과의 손익교환방법에 따라 총 손익을 정산하게 되므로, 환헤지에 따른 별도의 비용산출을 추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환헤지와 관련하여 환헤지의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해서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편입 자산의 성과에 따라 실적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투자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일반 위험(집합투자기구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 세부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파생상품 위험 |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상품투자 위험 | 상품(Commodity)의 가치는 해당 종목의 수요/공급 및 글로벌 경제성장률, 천재지변, 지리적/정치적 위험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을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그 위험을 회피할 수는 없으며, 주식이나 채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이 훨씬 큰 특징이 있습니다. |
| 환율변동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는 환율변동위험 경감을 위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해당국가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외국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낮아지면, 이로 인한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경우의 가치상승이 발생하나 반대로 환헤지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헤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환헤지 거래상대방의 거래불능 상황 또는 해당 통화의 거래가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등 환헤지 전략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헤지 거래가 전액 실행되지 못하거나 환율변동 위험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환헤지를 하는 경우에도 보유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해 헤지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변동, 유동성 비율 등 집합투자기구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
| 장외파생상품 위험 | 일반적으로 장외시장의 거래는 거래소를 통한 장내거래에 비하여 정부의 규제나 감독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래소의 정산이 행보증과 같이 장내거래 참여자들에게 제공되는 보호조치들이 장외거래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외파생상품투자에 투자시에는 거래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신용위기를 경험하는 경우 투자자금 전액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등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훨씬 큰 신용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장외시장은 통상 유동성이 부족하므로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가격으로 거래를 종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나. 특수위험(집합투자기구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 세부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추적오차 위험 | <p>추적 대상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 실현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라고 할지라도 아래의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추적대상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과 추적대상 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자는 당해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p> <p>※현실적 제약요소 : 지수 구성종목 변경에 따른 매매시 시장 충격, 상/하한가, 거래정지 등으로 인한 미체결, 인덱스운용시 활용하는 모델의 지수추적 과정, 환율변동(해외투자시), 운용/판매등 각종 보수, 위탁매매수수료, 지적 재산권 수수료와 같은 여러 가지 운용관련 비용발생, 너무 작은 운용규모, 대량 또는 빈번한 설정/해지 등</p> |
| 시장수익률 추종위험 | <p>이 집합투자기구는 시장(혹은 비교지수) 수익률 달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시장(혹은 비교지수) 수익률 하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즉, 시장 수익률 하락시 수익률하락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포트폴리오 조정 등 별도의 노력을 수행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

다. 기타 투자위험 등(일반위험 및 특수위험 외에 일반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집합투자기구의 가치변동에 영향이 비교적 작은 위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투자 의사 결정시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 세부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투자자금 회수위험 (유동성위험) |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 자산이 매각이 어려운 자산일 경우 환매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이 어려워 환매에 제때 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도매각에 따른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 환매청구시 위험 | 환매를 청구하시는 날과 환매대금을 결정하는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다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
| 운용실무 위험 | <p>집합투자업자는 운용실무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나, 예금이나 보험과는 달리 집합투자기구 운용구조는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이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실무상 오류는 기준가격 오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집합투자업자 등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p> <p>특히, 해외투자의 경우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상 이종통화의 이용 등으로 인해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 운용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발생 가능성이 국내투자시보다 더 높습니다. 또한 국내에 투자하는 때와는 달리 시차에 의해 시장의 개/폐장 시간대가 다를 수 있으며, 그 차이로 인해 투자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p> |
| 규모변동 위험 |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달성을 위한 투자전략의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나, 이 집합투자기구의 규모가 자산가치의 과도한 하락 또는 환매 등에 의해 적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투자전략의 수 |

| | |
|---|--|
| | 행 또는 충분한 분산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
| 과세제도변경위험 |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
| 과세위험 |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 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자산의 예 : 해외투자시 환차손익, 채권투자시 이자수익 등 *비과세대상자산의 예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
| 투자신탁해지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잠재적이해상충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와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 대주주 및 그 배우자, 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 이하 같음) 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와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포함하는 거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은 위 거래 또는 위 거래로 인하여 얻거나 받은 이익, 커미션 또는 보수에 대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에게 공시할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집합투자업자의 보수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잠재적 이해상충이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회사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당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또한 잠재적 이해상충을 포함하는 거래는 객관적 시장가격 또는 제3의 감정기관의 감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집합투자업자의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이어야 합니다. 이상의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포함하는 거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상의 제한을 준수합니다. |
| 소프트 달러 수수료 (Soft-Dollar Commission) | 집합투자업자는 소프트 달러 수수료(soft-dollar commission)를 발생시키는 거래가 고객에게 직접적이고 구별되는 이익이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시장의 관행을 엄중하게 준수하면서, 회사와 고객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소프트 달러 수수료 정책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으로 회사가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회사의 운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사분석(Research)과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에 한정되며 출장, 숙박, 엔터테인먼트, 일반 사무용품 및 서비스, 사무실 및 기자재, 회원권, 임직원 보수 또는 직접 지불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프트 달러 수수료(soft-dollar commission) : 집합투자업자가 증권회사 |

| | |
|---------------|--|
| | 등의 부가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이 아닌 다른 형태로 지급하는 것. 즉 집합투자업자가 증권회사 등의 부가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직접 현금으로 지불하는 대신 위탁매매거래 수수료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 |
| 해외납세의무자 관련 위험 |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미래에셋자산운용(주)은 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 등을 기준으로 원본손실가능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로 농업관련 일반 상품선물 등에 투자하므로 위험등급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위험 수준을 감내할 만한 위험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이 본인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한편, 아래 위험등급 분류는 미래에셋자산운용(주)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투자자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험등급 | 분류기준 | 상세설명(예시) |
|------|--------|---|
| 1 | 매우높은위험 | - 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에 1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단, 예상되는 최대손실 가능비율이 투자원금의 20% 이상인 것)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2 | 높은 위험 | - 위험자산에의 최대편입비가 50% 이상인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에 1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단, 예상되는 최대손실 가능비율이 투자원금의 20% 이하이거나, 최대손실가능비율이 20%를 초과하더라도 일정조건 하에서 원금보존추구형 투자전략을 갖는 것)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3 | 중간 위험 | - 위험자산에의 최대편입비가 50% 미만인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에 1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단, 예상되는 최대손실 가능비율이 투자원금의 0% 수준으로서 원금보존추구형 투자전략을 갖는 것) - 장내파생상품만을 이용한 차익거래를 주요 투자전략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 부동산실물(오피스빌딩등)에 주로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4 | 낮은 위험 | - 투자적격등급(BBB-이상)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5 | 매우낮은위험 | - MMF(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상세설명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투자 대상 및 손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여 분류합니다.
-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Fund of Funds)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등급을 기초로 각 자 집합투자기구의 모 집합투자기구 편입비율을 고려하여 자 집합투자기구별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 위험자산: 주식, 투기등급채권(BB+이하), 상품(Commodity) 등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
- 최대손실가능비율이라 함은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을 제외한 것으로서 사전에 계획된 수익구조상 발생가능한 손실가능비율을 의미합니다. 다만, 당사가 추정 또는 예상한 최대손실가능비율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은 높은 레버리지효과 및 상품구조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손실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매입, 판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 신청도 가능합니다.

(2)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류 | 구분 | 판매수수료부과여부 |
|-------|---|-----------|
| 종류A | 제한 없음 | 없음 |
| 종류B | 제한 없음 | 있음 |
| 종류I |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100억 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 원 이상 매입한 법인, 법 제9조제5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 없음 |
| 종류C-W | 판매회사의 일임·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을 매입 또는 환매하는 투자자 | 없음 |
| 종류S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 있음 |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가)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의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나)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다만,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집합투자기구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의 17시 [오후 5시] 이전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나. 환매

(1)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환매 청구도 가능합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17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5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의 17시 [오후 5시] 이전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4) 집합투자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집합투자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집합투자증권을 교부합니다.

(5)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2영업일전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3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한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6)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연기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집합투자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기구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

②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집합증권의 부분환매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②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익자는 이 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 집합투자업자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자체없이 수익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8) 환매수수료

이 집합투자기구는 빈번한 환매를 억제할 목적으로 일정기간 이내에 환매하실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빈번하게 환매하실 경우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환매수수료는 환매대금 마련을 위해 소요되는 각종 비용 및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이는 계속 투자중인 기존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환매수수료 부과 후에 실제로 수령하시는 금액은 환매수수료가 부과되기 전에 예상하신 금액보다 훨씬 작을 수 있습니다. 한편,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집합투자기구(펀드)에 귀속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종류A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 종류B | - |
| 종류I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 종류C-W |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
| 종류S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 다만, 이익금은 “투자원본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재투자된 지분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됩니다.

※ 환매수수료의 면제

1. 이 투자신탁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전부가 환매되는 경우
2. 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 변경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다만, 변경내용이 경미한 사항이거나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는 제외)
3.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른 목적식 투자자

(9) 후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는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환매금액을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집합투자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다음의 종류 집합투자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가) 종류 S 수익증권: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 (나) 종류 S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 해당사항 없음

다. 전환

해당사항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구분 | 내용 |
|--------------------|---|
| 산정 방법 | 기준가격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기준가격의 공고 · 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 ('순자산총액')을 그 공고 · 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1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1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 종류간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 종류간 판매보수등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서로 다르게 산정됩니다. |
| 산정주기 |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
| 공시시기 |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 게시합니다. |
| 공시방법 | 1000좌 단위로 1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1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

| | |
|------|--|
| 공시장소 |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investments.mirae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 · 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평가방법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 대상자산 | 평가방법 |
|-------------------------------|---|
| ①상장주식 |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 ②비상장주식 |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③장내파생상품 |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
| ④상장채권 |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
| ⑤비상장채권 |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④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
| ⑥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
| ⑦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구분 | 가입자격 | 수수료율 | | | |
|-------|-----------|-----------------|---------|-------------------|-------|
| | | 선취판매수수료 |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전환수수료 |
| 종류A | 제한 없음 | - | - |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 - |
| 종류B | 제한 없음 | 납입금액의 0.800% 이내 | - | - | - |
| 종류I | 기관투자자 등 | - | - |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 - |
| 종류C-W | 랩어카운트 투자자 | - | - |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 - |

| 구분 | 가입자격 | 수수료율 | | | |
|------|-------------------------------------|---------|--------------------------|-----------------|-------|
| | | 선취판매수수료 |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전환수수료 |
| 종류S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가입자 전용 | – |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 |
| 부과기준 | 매입시 | 환매시 | 환매시 | 환매시 | – |

* 가입자격의 자세한 사항은 제2부의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종류별 가입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구분 | 지급비용(연간, %) | | | | | | |
|-------|-------------------|------------|------------|-----------------|-------------|--------------|------------------------------|
| | 집합 투자업자 보수 | 판매회사 보수 | 신탁업자 보수 | 일반사무관 리회사 보수 | 기타비용 주1) | 총보수비용 주2) | 총보수비용(피 투자집합투자 기구보수포함) |
| 종류A | 0.54 | 1.100 | 0.03 | 0.02 | 0.17 | 1.86 | 1.86 |
| 종류B | 0.54 | 0.760 | 0.03 | 0.02 | 0.17 | 1.52 | 1.52 |
| 종류I | 0.54 | 0.030 | 0.03 | 0.02 | 0.15 | 0.77 | 0.77 |
| 종류C-W | 0.54 | – | 0.03 | 0.02 | – | 0.59 | 0.59 |
| 종류S | 0.54 | 0.300 | 0.03 | 0.02 | 0.17 | 1.06 | 1.06 |
| 지급시기 |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후급 | | | | 사유발생시 | – | – |

주1) 기타비용은 해당 투자신탁에서 직전 회계기간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설정일부터 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제외)입니다. 한편 기타비용은 대체로 설정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초기에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비용비율의 기본적인 산출 개념은 클래스별로 매일 발생하는 기타비용의 합산액을 기준시점 평균순자산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는 비용발생시점보다 계산기준시점에서 평균순자산이 줄어들 경우 나누는 분모 대비 나누어지는 분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비율상 크게 나타나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비용 발생시 각 클래스에 동일 비율로 기타 비용이 적용되지만 위에서 언급한 계산 방식에서 발생하는 분자/분모의 상대적 변동과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클래스별로 기타 비용 비율이 다르게 표기되어 나타납니다. 한편,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과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
|---------|----------------------------|
| 증권 거래비용 | 971 |
| 금융비용 | - |
| 발행분담금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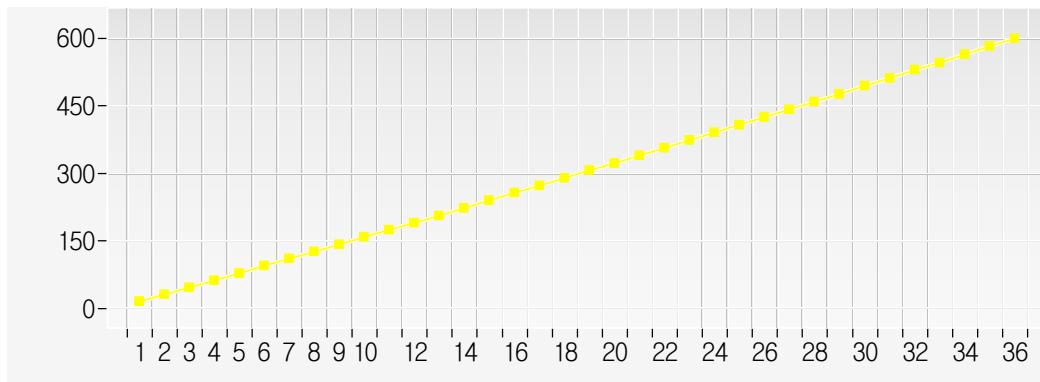
주2) "총보수·비용" 비율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1,000원)

| 수익증권 종류 | 구분 | 1년후 | 3년후 | 5년후 | 10년후 |
|---------|-------------------------------------|-----|-----|-------|-------|
| 종류A |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 190 | 599 | 1,046 | 2,324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 190 | 599 | 1,046 | 2,324 |
| 종류B |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 235 | 570 | 934 | 1,979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 235 | 570 | 934 | 1,979 |
| 종류I |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 78 | 248 | 433 | 962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 78 | 248 | 433 | 962 |
| 종류S |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 124 | 341 | 596 | 1,324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 124 | 341 | 596 | 1,324 |
| 종류C-W |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 76 | 190 | 331 | 737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 76 | 190 | 331 | 737 |

투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투자수익률은 보수 차감전 연간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후취판매수수료를 반영한 값으로 3년 이상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은 감소합니다.



■ 종류 C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종류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키게 됩니다.
- "전체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집합투자기구재산과 관련된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해외보관대리인 관련비용
 1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
-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 "해외보관대리인 관련비용"이라 함은 이 투자신탁이 해외에 투자하게 되는 경우 해외 투자자산의 안전한 보관등을 위해 이용하게되는 자산보관대리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당 결제비용(transaction fee)
 2. 보관비용(safe-keeping fee)
 3. 기타 부수비용(out-of pocket expenses: physical registration, DR conversion, tax reclaim, income collection 등)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 ② 또한 집합투자기구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③ 투자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아래의 집합투자기구 또는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 내용은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 · 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 환급비율*

*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으로 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투자자에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한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 · 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 · 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 (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기준가격 :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과표기준가격 : 펀드의 투자원금에 과세대상자산 – “(2) 투자자에 대한 과세” 참조 –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더하거나 차감하여 계산된 것으로서, 환매 또는 이익분배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비과세대상자산 – “(2) 투자자에 대한 과세” 참조 –에서 발생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손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투자자는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기준가격 및 과표기준가격 적용 사례

예 1)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모두 수익이 발생하여 과세되는 경우

| 구분 | 기준가격 | 과표기준가격 |
|------|----------|------------------------------|
| 매입시점 | 1000원 | 1000원 |
| 환매시점 | 1100원 | 1100원 |
| 손익 | (+) 100원 | (+) 100원 |
| 세금 | | (+) 100원 * 세율(15.4%) = 15.4원 |

예 2)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모두 손실이 발생하여 세금이 없는 경우

| 구분 | 기준가격 | 과표기준가격 |
|------|----------|-----------------------|
| 매입시점 | 1000원 | 1000원 |
| 환매시점 | 900원 | 900원 |
| 손익 | (-) 100원 | (-) 100원 |
| 세금 | | 과세손익 (-) 이므로 세금 '0' 원 |

예 3) 기준가격상 손실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손해가 난 상태이지만, 과표기준가격상 수익이 발생하여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자산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구분 | 기준가격 | 과표기준가격 |
|------|----------|------------------------------|
| 매입시점 | 1000원 | 1000원 |
| 환매시점 | 900원 | 1100원 |
| 손익 | (-) 100원 | (+) 100원 |
| 세금 | | (+) 100원 * 세율(15.4%) = 15.4원 |

예 4) 기준가격상 수익이 발생한 상태지만, 과표기준가격상 수익이 없어 세금이 없는 경우

| 구분 | 기준가격 | 과표기준가격 |
|------|----------|-----------------------|
| 매입시점 | 1000원 | 1000원 |
| 환매시점 | 1100원 | 900원 |
| 손익 | (+) 100원 | (-) 100원 |
| 세금 | | 과세손익 (-) 이므로 세금 '0' 원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반기재무제표를 제외한 아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의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 | 감사의견 |
|-------------------------|------|
| 7기(12.11.16 ~ 13.11.15) | 적정 |
| 8기(13.11.16 ~ 14.11.15) | 적정 |
| 9기(14.11.16 ~ 15.11.15) | 적정 |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 요약 재무상태표 | | | |
|----------|---------------|---------------|---------------|
| 항목 | 9기 (15.11.15) | 8기 (14.11.15) | 7기 (13.11.15) |
| 운용자산 | 47,161 | 40,953 | 51,356 |
| 증권 | 39,517 | 30,696 | 45,083 |
| 파생상품 | — | — | — |
| 부동산/실물자산 | — | — | — |
| 현금 및 예치금 | 6,244 | 5,457 | 4,772 |
| 기타운용자산 | 1,400 | 4,800 | 1,500 |
| 기타자산 | -72 | 810 | 11 |
| 자산총계 | 47,089 | 41,764 | 51,367 |
| 운용부채 | — | — | — |
| 기타부채 | 183 | 166 | 299 |
| 부채총계 | 183 | 166 | 299 |
| 원본 | 65,179 | 47,549 | 56,755 |
| 수익조정금 | — | — | — |
| 이익잉여금 | -18,273 | -5,950 | -5,686 |
| 자본총계 | 49,906 | 41,598 | 51,068 |

| 요약 손익계산서 | | | |
|------------|-------------------------|-------------------------|-------------------------|
| 항목 | 9기(14.11.16 ~ 15.11.15) | 8기(13.11.16 ~ 14.11.15) | 7기(12.11.16 ~ 13.11.15) |
| 운용수익 | -7,354 | 261 | -4,852 |
| 이자수익 | 979 | 1,242 | 1,721 |
| 배당수익 | 25 | 58 | 223 |
| 매매/평가차익(손) | -8,364 | -1,079 | -6,806 |
| 기타수익 | 4 | 40 | 8 |
| 운용비용 | 902 | 1,023 | 1,257 |
| 관련회사보수 | 581 | 681 | 942 |
| 매매수수료 | 244 | 220 | 196 |
| 기타비용 | 76 | 121 | 119 |
| 당기순이익 | -8,256 | -761 | -6,110 |
| 매매회전율 | 20 | 58 | 72 |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예를들어 1회계연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억 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억 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입니다.

나. 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 항목 | 재무상태표 | | |
|------------|---------------|---------------|---------------|
| | 9기 (15.11.15) | 8기 (14.11.15) | 7기 (13.11.15) |
| 운용자산 | 47,161 | 40,953 | 51,356 |
| 증권 | 39,517 | 30,696 | 45,083 |
| 주식 | -1,440 | - | - |
| ETF | 3,031 | 2,594 | 4,927 |
| 채권 | 35,044 | 28,102 | 40,156 |
| 매입여음 | - | - | - |
| 수익증권 | - | - | - |
| 외화유가증권 | 1,440 | - | - |
| 기타유가증권 | - | - | - |
| 파생상품 | - | - | - |
| 주가지수매입옵션 | - | - | - |
| ELS | - | - | - |
| ELW | - | - | - |
| DLS | - | - | - |
| 부동산/실물자산 | - | - | - |
| 부동산 | - | - | - |
| 현금 및 예치금 | 6,244 | 5,457 | 4,772 |
| 예금 | 351 | 50 | 65 |
| 외화예금 | 2,067 | 257 | 741 |
| CD | - | - | - |
| 정기예금 | - | - | - |
| 위탁증거금 | 3,825 | 5,149 | 3,966 |
| 청약증거금 | - | - | - |
| 기타운용자산 | 1,400 | 4,800 | 1,500 |
| 콜론 | 1,400 | 4,800 | 1,500 |
| 환매조건부채권 | - | - | - |
| 기타자산 | -72 | 810 | 11 |
| 미수이자 | - | 1 | - |
| 미수배당금 | - | - | - |
| 매도유가증권미수입금 | - | - | - |
| 선물정산미수입금 | - | - | 20 |
| 선납(선급) 원천세 | - | - | - |
| 기타 | -72 | 809 | -9 |
| 자산총계 | 47,089 | 41,764 | 51,367 |
| 운용부채 | - | - | - |
| 매도유가증권 | - | - | - |
| 미지급주식 | - | - | - |
| 미지급채권 | - | - | - |
| 미지급ETF | - | - | - |
| 주가지수매도옵션 | - | - | - |
| 기타부채 | 183 | 166 | 299 |
| 미지급보수 | 158 | 142 | 189 |
| 미지급해지금 | - | - | - |
| 미지급이익분배금 | - | - | - |
| 미지급원천세 | - | - | - |
| 기타부채 | 24 | 23 | 110 |
| 부채총계 | 183 | 166 | 299 |
| 원본 | 65,179 | 47,549 | 56,755 |
| 수익조정금 | - | - | - |
| 이익잉여금 | -18,273 | -5,950 | -5,686 |
| 당기순이익 | - | - | - |
| 감자차익/차손 | - | - | - |
| 자본총계 | 46,906 | 41,598 | 51,068 |

다.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 항목 | 손익계산서 | | |
|------------|-------------------------|-------------------------|-------------------------|
| | 9기(14.11.16 ~ 15.11.15) | 8기(13.11.16 ~ 14.11.15) | 7기(12.11.16 ~ 13.11.15) |
| 운용수익 | -7,354 | 261 | -4,852 |
| 투자수익 | 1,009 | 1,341 | 1,954 |
| 이자수익 | 979 | 1,242 | 1,721 |
| 배당수익 | 25 | 58 | 223 |
| 기타수익 | 4 | 40 | 8 |
| 매매이익 | 5,179 | 13,331 | 8,107 |
| 주식매매이익 | - | - | - |
| 파생상품매매이익 | 5,179 | 12,313 | 7,778 |
| 채권매매이익 | 79 | 283 | 21 |
| 외환거래이익 | 575 | 431 | 295 |
| 유동자산매매이익 | - | - | - |
| ETF매매이익 | 40 | 53 | 12 |
| 수익증권매매이익 | - | - | - |
| 기타매매이익 | 243 | 249 | - |
| 매매손실 | 14,482 | 14,411 | 14,914 |
| 주식매매손실 | 63 | - | - |
| 파생상품매매손실 | 12,862 | 13,102 | 13,638 |
| 채권매매손실 | 362 | 215 | 441 |
| 외환거래손실 | 267 | 339 | 428 |
| 유동자산매매손실 | - | - | - |
| ETF매매손실 | 299 | 239 | 405 |
| 수익증권매매손실 | 0 | - | - |
| 기타매매손실 | 627 | 514 | - |
| 운용비용 | 902 | 1,023 | 1,257 |
| 위탁보수비 | 222 | 253 | 348 |
| 판매보수비 | 338 | 404 | 560 |
| 수탁보수비 | 12 | 14 | 19 |
| 사무관리보수비 | 8 | 9 | 12 |
| 자문보수비 | - | - | - |
| 매매수수료 | 244 | 220 | 196 |
| 기타비용 | 76 | 121 | 119 |
| 당기순이익 | -8,256 | -761 | -6,110 |
| 비용 | 15,384 | 15,434 | 16,172 |
| 수익 | 7,128 | 14,673 | 10,061 |
| 천좌당 순이익(원) | -156 | -14 | -90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단위:백만)

종류A

| 기간 | 기간초잔고 | | 회계기간중 | | | | 기간말잔고 | | 재투자금액 |
|-------------------------|-------------------|--------|-------------------|-------|-------------------|--------|-------------------|--------|-------|
| | | | 설정(발생) | | 환매 | | | | |
|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
| '12.11.16~' 13.11.15 | 24,403 | 23,917 | 3,860 | 3,651 | 10,629 | 10,069 | 17,634 | 17,500 | - |
| '13.11.16~' 14.11.15 | 17,634 | 15,610 | 3,695 | 3,390 | 6,944 | 6,354 | 14,385 | 12,647 | - |
| '14.11.16~' 15.11.15 | 14,385 | 12,349 | 6,539 | 5,096 | 3,529 | 2,736 | 17,395 | 14,709 | - |

종류B

| 기간 | 기간초잔고 | | 회계기간중 | | | | 기간말잔고 | | 재투자금액 |
|-------------------------|-------------------|--------|-------------------|--------|-------------------|--------|-------------------|--------|-------|
| | | | 설정(발생) | | 환매 | | | | |
|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
| '12.11.16~' 13.11.15 | 54,398 | 54,398 | 7,479 | 7,240 | 22,829 | 22,025 | 39,048 | 39,613 | 174 |
| '13.11.16~' 14.11.15 | 39,048 | 35,397 | 9,640 | 8,952 | 15,838 | 14,916 | 32,850 | 29,434 | - |
| '14.11.16~' 15.11.15 | 32,850 | 28,977 | 15,319 | 12,225 | 9,046 | 7,240 | 39,123 | 33,961 | - |

종류I

| 기간 | 기간초잔고 | | 회계기간중 | | | | 기간말잔고 | | 재투자금액 |
|-------------------------|-------------------|----|-------------------|-------|-------------------|----|-------------------|-------|-------|
| | | | 설정(발생) | | 환매 | | | | |
|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
| '12.11.16~' 13.11.15 | 57 | 51 | 58 | 51 | 43 | 38 | 72 | 64 | - |
| '13.11.16~' 14.11.15 | 72 | 59 | 28 | 23 | 37 | 31 | 63 | 51 | - |
| '14.11.16~' 15.11.15 | 63 | 51 | 8,106 | 6,025 | 15 | 11 | 8,153 | 6,065 | - |

종류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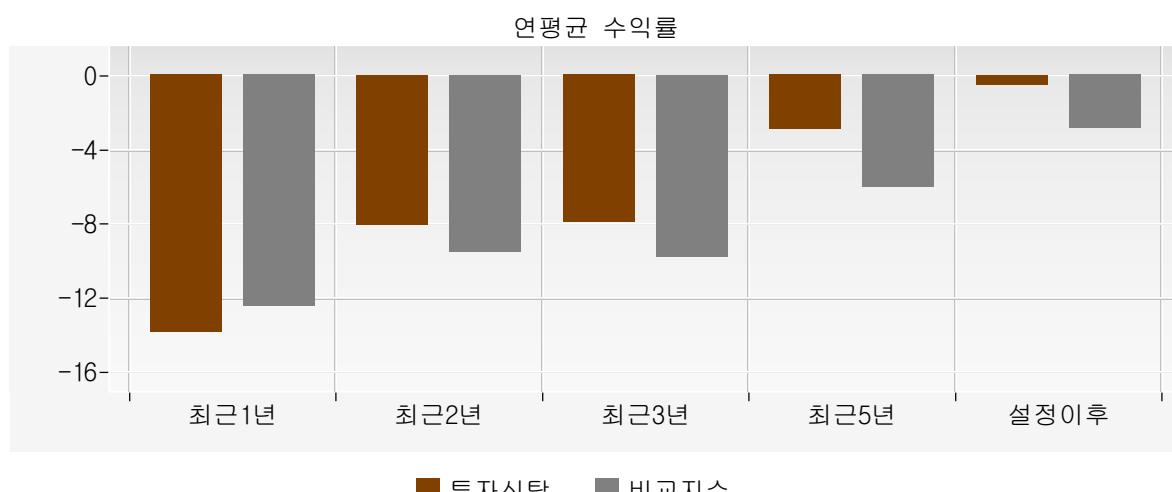
| 기간 | 기간초잔고 | | 회계기간중 | | | | 기간말잔고 | | 재투자금액 |
|-------------------------|-------------------|-----|-------------------|-----|-------------------|-----|-------------------|-----|-------|
| | | | 설정(발생) | | 환매 | | | | |
|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
| '14.04.23~' 14.11.15 | - | - | 269 | 243 | 19 | 17 | 250 | 225 | - |
| '14.11.16~' 15.11.15 | 250 | 220 | 726 | 582 | 470 | 377 | 506 | 425 | -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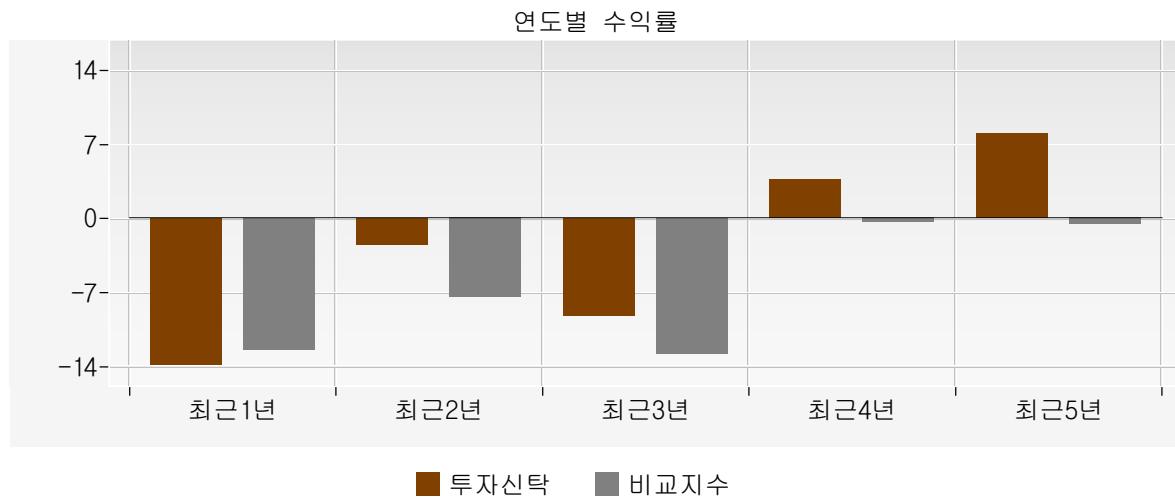
가. 연평균수익률(단위:%)

| 연도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3년 | 최근 5년 | 설정이후 |
|------|---------------------|---------------------|---------------------|---------------------|---------------|
| (기간) | '14.11.01~'15.10.31 | '13.11.01~'15.10.31 | '12.11.01~'15.10.31 | '10.11.01~'15.10.31 | 설정일~'15.10.31 |
| 투자신탁 | -13.97 | -8.13 | -8.02 | -2.99 | -0.56 |
| 종류A | -15.45 | -9.53 | -9.30 | -4.41 | -2.13 |
| 종류B | -15.15 | -9.25 | -9.04 | -4.11 | -1.78 |
| 종류I | -14.51 | -8.64 | -8.49 | -6.12 | -7.39 |
| 종류S | -14.75 | - | - | - | -16.45 |
| 비교지수 | -12.54 | -9.61 | -9.88 | -6.09 | -2.91 |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단위:%)

| 연도 | 최근 1년차 | 최근 2년차 | 최근 3년차 | 최근 4년차 | 최근 5년차 |
|------|---------------------|---------------------|---------------------|---------------------|---------------------|
| (기간) | '14.11.01~'15.10.31 | '13.11.01~'14.10.31 | '12.11.01~'13.10.31 | '11.11.01~'12.10.31 | '10.11.01~'11.10.31 |
| 종류A | -15.45 | -4.29 | -10.91 | 1.83 | 6.13 |
| 종류B | -15.15 | -3.96 | -10.58 | 2.24 | 6.60 |
| 종류I | -14.51 | -3.25 | -9.91 | 3.00 | -9.58 |
| 종류S | -14.75 | -23.09 | - | - | - |
| 투자신탁 | -13.97 | -2.65 | -9.34 | 3.65 | 8.05 |
| 비교지수 | -12.54 | -7.59 | -12.92 | -0.49 | -0.7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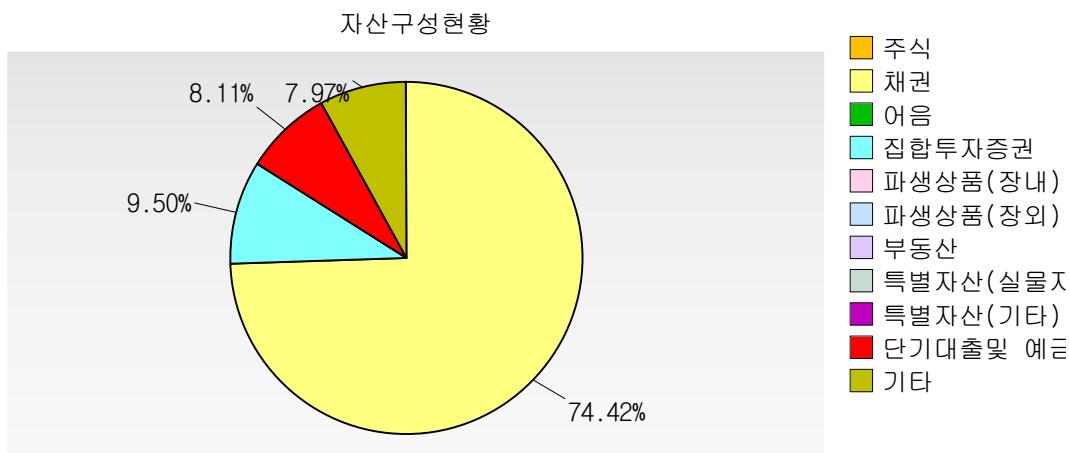
* 연평균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 추이는 과세전의 수익률입니다.

* 비교지수는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Agriculture Index^(r) Excess Return이며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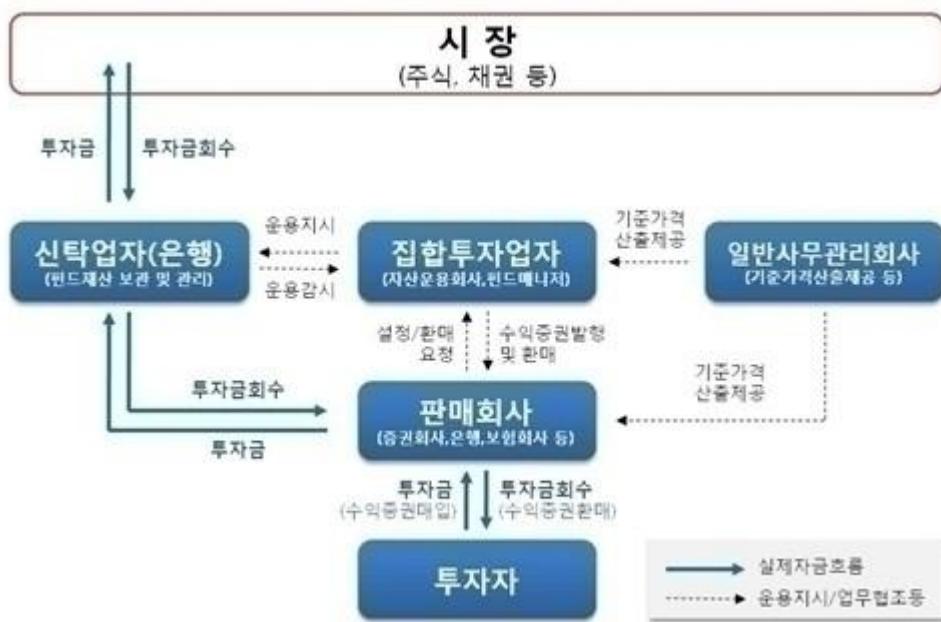
*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으로서 각 수익증권 종류별로 설정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연평균 수익률 중 ‘설정일 이후’ 수익률은 편차가 클 수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단위 : %, 백만, 2015.11.15 기준)

| 통화별 구분 | 증권 | | | | 파생상품 | | 부동산 | 특별자산 | | 단기내 출및예 그 | 기타 | 자산 총액 |
|-----------|----|--------|----|-------------|------|----|-----|----------|----|-----------------|-------|----------|
| | 주식 | 채권 | 어음 | 집합 투 자증권 | 장내 | 장외 | | 실툴 자사 | 기타 | | | |
| KRW(한국) | - | 35,045 | - | 3,032 | - | - | - | - | - | 1,752 | 3,753 | 43,581 |
| | - | 74.42 | - | 6.44 | - | - | - | - | - | 3.72 | 7.97 | 92.55 |
| USD(미국) | - | - | - | 1,441 | - | - | - | - | - | 2,067 | - | 3,508 |
| | - | - | - | 3.06 | - | - | - | - | - | 4.39 | - | 7.45 |
| 합계 | - | 35,045 | - | 4,473 | - | - | - | - | - | 3,819 | 3,753 | 47,089 |
| | - | 74.42 | - | 9.5 | - | - | - | - | - | 8.11 | 7.97 | 100 |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투자가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 등)에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한 금전등을 납입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해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고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금전 등을 납입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판매회사에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신탁업자가 보관/관리하고 있는 투자신탁재산을 증권 등에 투자하도록 운용지시합니다. 투자자(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한 운용결과에 대해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 | |
|--|---|
| 회 사 명 | 미래에셋자산운용(주)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 센터원빌딩 이스트타워 (우.100-210) ☎ 1577-1640 |
| 홈 페 이 지 주 소 | http://investments.miraeasset.com |
| 자 본 총 계 | 1조 1,011억 원 (2014년 12월 31일 기준) |
| 주 요 주 주 현 황 | 박 현 주 外 |
| 회 사 연 력 | 1997년 07월 미래에셋 설립 2006년 11월 미래에셋투신운용주식회사 합병 2012년 3월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주식회사 합병 |
|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 관계인 현황 | - 신탁업자 : 우리은행 -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 :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생명 - 일반사무관리회사 : 미래에셋펀드서비스 |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 해지 / 집합투자증권의 운용, 운용지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억 원)

| 요약 재무상태표 | | | 요약 손익계산서 | | |
|----------|------------|------------|----------|-----------------------|-----------------------|
| 항 목 | 2014.12.31 | 2013.12.31 | 항 목 | 14.01.01~14.1 2.31 | 13.04.01~13.1 2.31 |
| 현금 및 예치금 | 426 | 264 | 영업수익 | 2,258 | 1,756 |
| 유가증권 | 12,379 | 10,063 | 영업비용 | 1,394 | 1,073 |
| 대출채권 | 13 | 12 | 영업이익 | 864 | 682 |
| 유형자산 | 24 | 41 | 영업외수익 | 2 | 1 |
| 기타자산 | 382 | 395 | 영업외비용 | 135 | 33 |
| 자산총계 | 13,361 | 10,932 | 법인세차감전이익 | 731 | 650 |
| 예수부채 | 1 | 32 | 당기순이익 | 530 | 482 |
| 기타부채 | 2,349 | 489 | | | |
| 부채총합 | 2,350 | 521 | | | |
| 자본금 | 679 | 679 | | | |
| 자본잉여금 | 2,054 | 2,054 | | | |
| 기타포탈손익누계 | -62 | 157 | | | |
| 이익잉여금 | 8,340 | 7,835 | | | |
| 자본총계 | 11,011 | 10,411 | | | |

라. 운용자산 규모(2015.12.31 현재 / 단위:십억좌 / 협회 발표기준)

| 집합투자기구 종류 | 증권 | | | | | 단기 금융 | 파생 상품 | 부동산 | 재간접 | 특별자산 | PEF | 투자 일임 기타 | 총 계 |
|-----------|--------|-------|-------|--------|--------|-------|-------|-------|--------|-------|-------|----------|--------|
| | 주식 | 혼합 주식 | 혼합 채권 | 채권 | 소계 | | | | | | | | |
| 수탁고 | 17,950 | 2,789 | 4,109 | 22,955 | 47,803 | 1,267 | 3,103 | 4,929 | 17,974 | 1,539 | 1,432 | | 78,047 |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가. 회사의 개요**

| | |
|----------|--|
| 회사명 | (주)신한은행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대경빌딩 ☎ 02-756-0505 |
| 홈페이지 | www.shinhan.com |
| 연혁 | 1982년 7월 신한은행 창립 2001년 9월 신한금융지주회사 출범 |

나. 주요업무**(1) 주요업무**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 · 수익금 · 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의무]**

①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 ·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책임]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판매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 | |
|----------|--|
| 회사명 | 미래에셋펀드서비스(주)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DMCC빌딩 12층 ☎ 02-769-7800 |
| 홈페이지 | fs.miraeasset.co.kr |
| 연혁 | 1998년 11월 (주)한국채권연구원 설립 2000년 8월 금융감독원 일반사무관리업 등록 |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집합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 | |
|----------|---|
| 회사명 | 한국자산평가(주)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삼환빌딩 4층 ☎ 02-399-3350 |
| 홈페이지 | www.koreaap.com |
| 회사명 | 나이스피앤아이(주)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 02-398-3900 |
| 홈페이지 | www.nicepni.co.kr |
| 회사명 | KIS채권평가(주)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 02-3215-1433 |
| 홈페이지 | www.bond.co.kr |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권리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자총회 등

(1) 집합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및 신탁 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종류집합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등은 아래의 투자자 총회의 소집 절차를 준용합니다. 다만, 종류집합투자자총회의 운용비용은 그 종류집합투자기구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모자형 투자신탁인 경우, 모두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모두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는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소집됩니다.

(2) 집합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서면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법 제190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1조에 의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ㄱ)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내용을 서면, 전화 · 전신 · 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ㄴ)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ㄷ)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근)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익자의 이익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과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는 법 제190조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투자자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는 법 제190조제8항에 따라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도, 법 제190조제6항의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및 간주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합니다.

(3) 집합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9)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10)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

- 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가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채무체표 및 그 부속명세서/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

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등 운용실적에 관해서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아래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공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익자는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이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의 환매수수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폐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이 임의로 해지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춰 판매회사 등을 통해 수익자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법 제 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라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가 기재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的情形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기타 법 시행령 92조3항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해지 또는 해산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지만, 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와 같이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 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3) 법 시행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

- 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8)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9)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10) 그 밖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법 제87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등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파생상품 운용에 따른 공시

이 집합투자기구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각의 사항을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investments.miraeasset.com/fundInfo/derivation.do>)에 공시하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금액
2.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만기시점의 손익구조
3.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손익구조의 변동 또는 일정한 보유기간에 일정한 신뢰 구간 범위에서 시장가격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에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금액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기간 | 매매처명 | 거래구분 | 자산구분 | 거래금액 |
|---------------------|--------|------|------|-----------------|
| '12.11.16~'13.11.15 | 미래에셋증권 | 위탁거래 | 주식 | 1,815,595,250 |
| '12.11.16~'13.11.15 | 미래에셋증권 | 위탁거래 | 채권 | 2,998,462,500 |
| '12.11.16~'13.11.15 | 우리은행 | 위탁거래 | 유동자산 | 128,090,000,000 |
| '13.11.16~'14.11.15 | 미래에셋증권 | 위탁거래 | 주식 | 2,148,050,070 |
| '13.11.16~'14.11.15 | 우리은행 | 위탁거래 | 유동자산 | 38,000,000,000 |
| '14.11.16~'15.11.15 | 미래에셋증권 | 위탁거래 | 주식 | 610,296,200 |

| 기간 | 매매처명 | 거래구분 | 자산구분 | 거래금액 |
|---------------------|------|------|------|----------------|
| '14.11.16~'15.11.15 | 우리은행 | 위탁거래 | 유동자산 | 93,200,000,000 |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증개업자의 선정기준

| 구 분 | 내 용 |
|--------------|---|
| <증권의 거래> | <p>① 선정 시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매주문이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 중개회사가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 일 것 -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유리할 것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p>② 선정방법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매업무 담당부서, 운용부서 및 리서치부서의 담당자들이 분기 1회 이상 투자증개업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투자증개업자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실제 실행결과를 분기별로 점검함. |
|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 <증권의 거래>의 경우와 같음 |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알림]

"Jim Rogers", "James Beeland Rogers, Jr.", "Rogers",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Agriculture Index Excess Return" 는 Beeland Interests, Inc.의 트레이드 마크이자 서비스마크이며,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와 "RICI" 는 "Beeland Interests, Inc.의 등록된 트레이드 마크 및/또는 서비스마크로서 James Beeland Rogers, Jr.가 소유, 관리하고 있으며 라이센스의 대상이 됩니다. Jim Rogers/James Beeland Rogers, Jr. 와 이와 유사한 이름들은 James Beeland Rogers, Jr. 의 트레이드 마크이자 서비스 마크입니다.

미래에셋로저스농산물지수 특별자산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은 Beeland Interests, Inc.("Beeland Interests") 또는 Jim Rogers로부터도 후원을 받거나 보증, 판매 또는 판촉되지 않습니다. 또한 Beeland Interests나 Jim Rogers는 이 투자설명서의 정확성이나 완전성과 관련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을 대표하거나 보장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뿐 아니라, 실물자산(Commodity)이나 관련 유가증권에의 투자 또는 특히 미래에셋로저스농산물지수 특별자산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 또는 선물에의 투자를 권유하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BEELAND INTERESTS와 계열사 및 관계자들은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RICI®"), 이 지수의 sub-index 및 그 안에 포함된 자료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당자는 자료의 오류, 누락, 중단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미래에셋로저스농산물지수 특별자산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 또는 RICI®, 이 지수의 sub-index와 관련 자료를 사용하는 자가 얻게 될 결과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BEELAND INTERESTS와 그 계열사 및 관계자들은 명시적인 또는 묵시적인 그 어떤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상품성이나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또는 RICI®, 이 지수의 sub-index의 사용에 관한 모든 보증을 모두 부인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사항들과 관련하여 BEELAND INTERESTS와 그 계열사 및 관계자들은 투자에 따른 어떠한 손실이나 간접적, 법적, 특정한 혹은 필연적인 손실에 대하여 그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다 할지라도 제한없이, 어떠한 상황에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붙임] 용어풀이

| 용어 | 내용 |
|------------------|--|
| 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
| 집합투자업자 |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
| 집합투자기구(=펀드) |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투자신탁, 투자회사, 뮤추얼펀드, 투자기구 등으로 불리우나, "펀드"라는 용어로 가장 널리 불리웁니다. |
| 신탁업자 |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
|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
| 개방형(집합투자기구) |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
| 폐쇄형(집합투자기구) |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
| 추가형(집합투자기구) |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
| 단위형(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의 모집시기(판매기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
| 종류형(집합투자기구) |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 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되어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방법은 동일합니다. |
| 증권펀드 |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
| 주식형펀드 | 일반적으로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
| 채권형펀드 | 일반적으로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펀드로서 통상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
| 주식혼합/채권혼합형 펀드 | 일반적으로 주식과 채권에 모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로서, 주식에 최대 5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주식혼합형, 주식에 최대투자 가능비율이 50% 미만인 펀드를 채권혼합형이라고 말합니다. |
| 상장지수펀드 | 특정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펀드로서 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하기 때문에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
| 부동산펀드 |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 포함)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
| 금리스왑 |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 의무만을 바꾸어,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
| 기준가격 |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까지의 총 발행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통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 레버리지효과 | 소액의 증거금으로 거액의 거래규모를 수반하는 거래로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기초자산의 가격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레버리지효과는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흔히 발생할 수 있으며, 매우 높은 투자위험을 초래합니다. |
| 신탁보수 | 펀드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 선물환거래 |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

| | |
|----------------------------|---|
| 성과보수 | 현행법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약관(계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가능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 발생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수익자총회 (=투자자총회, 집합투자자총회) | 수익증권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수익증권 |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펀드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
| 신탁고 |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
| 신주인수권부사채 |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
| 실물자산 |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 등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능한 물품 등을 의미합니다. |
| 원천징수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
| 자산유동화증권 |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
| 전환사채 |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기간 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
| 주식워런트 |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워런트"입니다. |
| 위험평가액 | 법 시행규칙 제4-54조(위험평가액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위험평가액을 말합니다. |
| 판매수수료 | 투자자가 펀드매입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
| 설정 |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
| 해지 |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
| 환매 | 만기가 되기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환매수수료 | 특정기간 이내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됩니다. |
| 환매조건부채권 | 은행등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
| 환해지 |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국통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제거하는 환해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